

[변경 대비 표]

■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

펀드명	(변경 전)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변경 후)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변경서류	집합투자계약
변경사유	- 펀드명 변경 -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22일

■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펀드명 변경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제2조 (용어의 정의)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7. (현행과 동일)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10.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펀드명 변경,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5. (현행과 동일) 6. 모자형 ③ (현행과 동일)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BNK초단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제16조 (투자목적)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이 투자신탁은 단기사채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u>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u> 2. <u>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u> 3. <u>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u> 4. <u>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u> 5. <u>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u>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u>제3조제4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u>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u> <u>6.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u> <u>8. 증권의 차입</u> <u>9. (생략)</u> <u>② (생략)</u> <u>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9. (현행과 동일)</u> <u>② (현행과 동일)</u> <u><삭제></u>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u>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단,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A- 등급 미만인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 <u>2.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40% 이하로 한다.</u> <u>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u> <u>4.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u> <u>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u> <u>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u>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u>1.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u> <u>2. 제17조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 <u>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u> <u>8.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u>	<u><삭제></u> <u><삭제></u>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u> <u>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 <u>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u>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u>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u><삭제></u> <u><삭제></u>

		<u>용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 3. <u>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4 <u>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5 <u>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 6. <u>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호 내지 제

외)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8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2조제4호,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u>모투자신탁</u>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25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

권의 매수			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환매업무)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 ⑦ (생략) 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호 (환매연기)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

		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생략)	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u>투자신탁재산인</u>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u>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u>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u>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인</u>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제37조 (수익자총회)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 ⑩ (생략) <u><신설></u>	① ~ ⑩ (현행과 동일) ⑪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제39조의 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u><신설></u>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u>
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	문구 추가	① (생략) <u><신설></u> 1. ~ 9. (생략) ②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9. (현행과 동일)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현행과 동일)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략)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생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삭제> ④ (현행과 동일)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투자구조 변경 (모자형 전환)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동일)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수 있다. ⑦ ~ ⑧ (현행과 동일)
<부칙>		<신설>	< 부 칙 8> (시행일) 이 투자신탁은 2026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끝>